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권오을 (국가보훈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상이등급 6급인 재해부상군경까지 지급하던 부양가족수당의 지급범위를 상이등급 7급인 재해부상군경까지 확대하고, 상이등급 1급인 재해부상군경에게 매월 지급하는 중상이(重傷痍)부가수당,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사망군경 등의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과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간호수당을 지급대상 및 상이등급별로 각각 약 5퍼센트 인상하는 한편, 보상금 인상에 맞추어 보상금의 지급정지 수준을 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12. 8. ~ 12. 1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상이등급 6급”을 “상이등급 7급”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1호 중 “203만원”을 “213만1천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40만4천원”을 “147만3천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85만5천원”을 “89만8천원”으로 한다.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7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양가족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7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부양가족수당, 중상이부가수당, 보상금 및 간호수당부터 적용한다.

[별표 2]

보상금 지급 구분표(제10조 관련)

1. 재해부상군경

상이등급별	월 지급액(천원)	상이등급별	월 지급액(천원)
1급 1항	2,841	5급	1,482
1급 2항	2,679	6급 1항	1,352
1급 3항	2,565	6급 2항	1,245
2급	2,281	6급 3항	836
3급	2,132	7급	496
4급	1,789		

2. 재해사망군경의 유족과 재해부상군경 중 상이등급 6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구분	월 지급액(천원)
가. 재해사망군경의 유족	
1) 배우자	1,497
2) 25세 미만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1,736
3) 부모 또는 조부모	1,471
나. 재해부상군경 중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1) 배우자	1,298
2) 25세 미만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1,508
3) 부모 또는 조부모	1,277
다. 재해부상군경 중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1) 배우자	476
2) 25세 미만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688
3) 부모 또는 조부모	452

비고: 사망한 사람이 2명 이상인 유족에 대해서는 사망한 사람 1명당 보상금 지급 구분에 해당하는 월 지급액을 각각 합산하여 지급한다.

[별표 4]

간호수당 지급 구분표(제20조 관련)

구분	지급기준	월 지급액 (천원)
1. 상시 간호수당	가. 상이등급 1급 1항에 해당하는 사람 나. 상이등급 1급 2항 4116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 상이등급 1급 3항 4202호 및 510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 중 어느 하나의 부위에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고, 다른 부위에 5급 이상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3,375
2. 수시 간호수당	가. 상이등급 2급 4108호, 4203호 및 5103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상시 간호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9호에 따른 2개 이상 상이처의 상이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1급이 되는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다.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상이등급 2급 또는 상이등급 3급부터 5급까지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2,250

[별표 7의2]

보상금 중 지급정지 금액 기준(제30조 관련)

1. 재해부상군경: 별표 2 제1호에 따른 보상금 중 매월 다음 금액의 지급을 정지한다.

상이등급별	월 정지금액(천원)	상이등급별	월 정지금액(천원)
1급 1항	1,245	3급	887
1급 2항	1,245	4급	544
1급 3항	1,245	5급	237
2급	1,036	6급 1항	107

2. 재해사망군경의 유족과 재해부상군경 중 상이등급 6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별표 2 제2호에 따른 보상금 중 매월 다음 금액의 지급을 정지한다.

구분	월 정지금액 (천원)
가. 재해사망군경의 유족	
1) 배우자	252
2) 25세 미만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491
3) 부모 또는 조부모	226
나. 재해부상군경 중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1) 배우자	53
2) 25세 미만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263
3) 부모 또는 조부모	32
다. 재해부상군경 중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25세 미만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를 말한다)	202

비고: 사망한 사람이 2명 이상인 유족으로서 2개 이상의 유족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보상금에 해당하는 월 정지금액을 합산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부양가족수당) ①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이란 <u>상이등급 6급</u> 을 말한다.	제21조(부양가족수당) ①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이란 <u>상이등급 7급</u> 을 말한다.
제22조(중상이부가수당) ① (생략) ② 법 제19조에 따른 중상이부가수당의 월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상이등급 1급 1항에 해당하는 사람: <u>203만원</u> 2. 상이등급 1급 2항에 해당하는 사람: <u>140만4천원</u> 3. 상이등급 1급 3항에 해당하는 사람: <u>85만5천원</u>	제22조(중상이부가수당)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 <u>213만1천원</u> 2. ----- ----- <u>147만3천원</u> 3. ----- ----- <u>89만8천원</u>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5420